

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

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(채무자)와 채권자〇〇〇사이에 〇〇〇년 〇월 〇일 건설기계(중기)담보의 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은 채권자○○○에게 다음 건설기계(중기)(이하 중기라 함)를 본 계약서의 조항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○○○은 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며 제2조의 금원을 대여한다.

구 분	н	건설기계	건설기계	형	식	중기번호	원동기의	사 용 의	
	正	등록번호	명	(년식을	포함)	궁기민오	형 식	본거위치	

제2조 대여금 :

워(

₩). 이자 : 연2할, 변제는 아래와 같이

○회로 나누어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.

급	액	지 급	기	일	금	액	지 급	기	일
금	안	년	월	일	그	원	년	월	일
금	원	년	월	일	그	원	년	월	일
금	원	년	월	일	금	원	년	월	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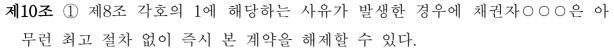
- 제3조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이 제2조의 변제기일에 변제를 지연하면 대여금원에 대한 이율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4할로 금원을 채권자〇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4조 ①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은 본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조 기재의 등록건설기계(중기)에 채권자○○○을 저당권자로 하는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.
 - ②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은 위에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설기계

(중기)저당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단, 저당권설정등록에 요합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.



- 제5조 위의 건설기계(중기)가 멸시 또는 훼손하거나 그 가격이 제2조에 의한 잔대금 채무액 이하로 하락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은 채권자○○○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라도 추가담보 또는 대체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**제6조**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은 채권자〇〇〇의 승낙 없이 위 건설기계(중기)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제물건을 부가하여 기필 또는 차대에 부과한 등록부호, 성명, 상표, 증명 부호를 제거, 말소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은 제6조에 게재한 채무완제에 이르기까지 위의 차량을 채권자○○○의 승낙없이 타에 매매, 양도, 대여 또는 담보공여, 기타 채권자○○○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또한 건설기계소유자○○○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사용 보관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을 당한 때에는 즉시 채권자○○○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8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은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. 이 경우,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은 즉시 채권자○○○에게 그 시점의 채무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.
 - 1.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이 본 계약에 정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일부라도 약속 된 기일에 이행치 아니한 경우.
 - 2.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파산의 신청, 형사소추, 어음교환소의 은행거래 정치처분을 받거나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사유가 생길 때.
 - 3.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이 위의 차량에 관한 공조 공과를 체납한 경우.
 - 4.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이 감독관청으로부터 그 영업의 정지·허가의 취소나 차량사용인가의 취소를 받거나 영업을 폐지·변경한 때.
 - 5.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.
- 제9조 ①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이 본 계약에 정한 채무이행을 해태한 때에는 채 권자○○○은 그 선택에 따라 채권자○○○이 선임한 감정인의 위 차량에 대한 감정가격으로 본 계약에 의한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의 채무 중 그 상당액에 대하여 대물변제로서 위의 차량의 소유권을 무조건 종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.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은 감정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으며 차량을 즉시 채권자○○○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 - ② 전항에 의한 대물변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채권자〇〇〇이 건설기계 소

유자〇〇〇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일방적으로 그 취지를 건설기계 소유자〇왕 의 현주소로 발신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

- ② 전항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의 보증인으로부터 상당금액의 지급이 있거나, 담보의 제공 또는 적당한 보증인을 세웠을 때에는 채권자〇〇〇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.
- 제11조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이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채권자○○○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에게 구조소로 발송한 우편물의, 미도착 또는 연착에 의하여 생긴 손해 내지 불이익에 대하여 채권자○○○은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.
- **제12조** 본 계약중 채권자〇〇〇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나 채권자〇〇〇에게 대한 통지는 모두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.
- **제13조**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○○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.
- **제14조** 보증인들은 본 계약에 의한 채권자○○○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.
- 제15조 ① 보증인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파산의 신청 또는 형사소추를 받거나 기타 보증인으로서 부당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은 채권 자○○○에게 신규로 적당한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전항의 사유가 생긴 때,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은 즉시 채권자〇〇〇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채권자〇〇〇이 요구하는 적당한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.
- 제16조 건설기계 소유자○○○ 또는 보증인 등은 본 계약상의 금전채무(단, 제17조 2호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제외함)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에는 위의 저당권실행의 전후를 불문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.

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·날인하고 건설기계 소유자〇〇〇·채권자〇〇〇 각 1통씩 소지한다.



채	주	소	
권 자	성	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_ 전화</mark> 번호
채	주	소	
무 자	성	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_ 전화</mark> 번호
연 대	주	소	
보증인		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_ 전화</mark> 번호